『유럽연합, 핵심원자재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심충분석 보고서

2023. 11.

통보문서 번호	미통보문	규제분야	전 제품
통보국	유럽연합	HS Code	_
작성기관	TBT종합지원센터	작성자 문의처	박형준 02-3487-7754





[목 차]

1. 규제 개요 1
2. 규제 제·개정 내용2
3. 관련 법령 및 표준11
붙임. 규제원문 12

│ 규제 개요

□ 발표 내용

- o '23.9.18., EU 위원회는 핵심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정 초안을 발표함¹⁾
- 최근 비농업·비에너지 원자재인 핵심원자재의 주요 추출·가공 국가의 수출 제한 등 원자재 공급의 위험과 종속성을 낮추고자 함
- 특히, 'Chapter 5. 지속가능성' 은 핵심원자재 및 영구자석* 제품의 순환성을 개선하고, 환경발자국을 낮추기 위한 조항을 포함함
- * 영구자석(Permanent magnets) : 외부 자기장에서 제거된 후에도 자성을 유지하는 자석

	■ 핵심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규정 초안, 2023년 3월
규제 명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Draft Regulation, March
	2023
규제 부처	■ EU 위원회
π៕구세	■ EU Commission
요구사항 유형	■ 순환 경제
제·개정 상태	■ 개정 초안
WTO TBT 통보	■ 미통보문
고시일	-
채택일	-
의견수렴 마감일	■ 2023년 5월 16일
발효일	■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
준수기 한	■ 위임법률 제정에 따라 다르므로 모니터링 필요

□ 적용범위 및 수출규모

적 용대 상	■ 핵심원자재 및 이를 포함한 제품	
4949	(규제 개정 내용의 적용 대상 참조)	
HS Code	■ 전제품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 68,072,166 (2022년 기준)	

¹⁾ 규제원문 URL :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3-0325_EN.pdf

2 기 규제 개정 내용

□ 적용 대상

- ㅇ 본 규정은 하기 핵심원자재 및 이를 포함한 제품에 적용됨
- '핵심원자재' 란 경제적 중요도(EI)가 높고, 공급 위험도(SR)가 임계값에 가깝거나 초과한 워자재를 말함

핵심원자재 목록

- (a) 안티모니(Antimony)
- (b) 비소(Arsenic)
- (c) 보크사이트(Bauxite)
- (d) 바륨(Barvte)
- (e) 베릴륨(Beryllium)
- (f) 비스무트(Bismuth)
- (g) 붕소(Boron)
- (h) 코발트(Cobalt)
- (i) 점결탄(Coking Coal)
- (i) 구리(Copper)
- (k) 장석(Feldspar)
- (I) 형석(Fluorspar)
- (m) 갈륨(Gallium)
- (n) 게르마늄(Germanium)
- (o) 하프늄(Hafnium)
- (p) 헬륨(Helium)
- (g) 중희토류 원소(Heavy Rare Earth Elements)

- (r) 경희토류 원소(ight Rare Earth Elements)
- (s) 리튬(Lithium)
- (t) 마그네슘(Magnesium)
- (u) 망간(Manganese)
- (v) 천연 흑연(Natural Graphite)
- (w) 니켈 배터리 등급(Nickel battery grade)
- (x) 니오븀(Niobium)
- (v) 인산염 암석(Phosphate rock)
- (z) 인(Phosphorus)
- (aa) 백금족 금속(Platinum Group Metals)
- (bb) 스카듐(Scandium)
- (cc) 실리콘 금속(Silicon metal)
- (dd) 스트론튬(Strontium)
- (ee) 탄탈륨(Tantalum)
- (ff) 티타늄 금속(Titanium metal)
- (gg) 텅스텐(Tungsten)
- (hh) 바나듐(Vanadium)

□ 지속가능성

1

- ㅇ 순환성에 대한 국가적 조치
- 위원회 및 회원국은 핵심원자재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회원국은 본 규정의 발표일로부터 24개월 후까지 하기 가)~차)를 위해 고안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채택 및 시행해야 함
 - 가) 제1조의 (2)(db)*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원자재의 수요 증가를 완화해야 함
 - *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효율성 및 재료 대체의 활용도 증가
 - 나) 지침 2008/98/EC의 제4조에 따라 재사용 및 수리 가능성뿐만 아니라 핵심원자재 회수율이 높은 폐기물, 금속 스크랩 및 수명 종료 제품의 수집, 분류 및 처리를 증가시켜야 함

- · 특히, '환경 및 공중보건에 관한 연합 법률'에 따라 제품 수명 및 핵심원자재 재활용 시설에 대한 투입물로써 재활용 가능한 재료의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활용 시스템 도입을 보장해야 함
- 다) 핵심원자재 회수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및 구성품의 폐기물 방지, 재사용, 수리, 리퍼비시, 재제조 및 용도 변경을 증가시켜야 함
- 라) 금속스크랩 및 수명이 다한 제품에서 추출한 재료를 포함하여 1차 핵심원자재 대신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2차 핵심원자재의 사용을 늘리고, 공공조달과 관련된 낙찰 기준에 재활용 함량 고려 및 재료 사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고려 등 제품 리퍼비시를 촉진해야 함
- 마) 전체 가치사슬에서 핵심원자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증가시켜야 함
- 바) 핵심원자재 재활용 기술의 기술적 성숙도를 높이고, 국가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해당 효과에 대한 지원 조치를 포함시킴으로써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여 응용 분야에서 재료 효율성 및 핵심원자재 대체를 촉진해야 함
- 사) 기술 육성, 습득, 숙련도 향상 등의 조치를 통해 인력이 핵심원자재 가치사슬의 순환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함
- 아) 국가 R&I(연구혁신)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목적의 지원 조치를 포함하여 제품 설계 변경 또는 재활용성 증가를 통해 제품에서 핵심원자재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자) 생산국에서 핵심 광물의 책임 있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프로그램에 역량 강화 및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촉진해야 함
- 차) 최적의 재료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폐기물과 같은 핵심원자재를 포함하는 폐기물 흐름의 재활용 과정에 대한 품질 표준 도입을 지원해야 함
- 언급된 국가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해당 조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 회원국은 해당 조치의 관련 정보 및 모범 사례를 유럽핵심원자재 이사회와 공유해야 함
- 1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연합 법률에 따라 수거, 처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에 대한 2 특정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제품 및 폐기물을 대상으로 함
 - 기타 제품 및 폐기물의 경우, 해당 조치는 기존 연합 법률과 일관되게 시행해야 함
- 회원국은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후까지 추출폐기물, 특히 잠재적·경제적으로 회수 가능한 핵심원자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된 폐쇄된 폐기물 시설로부터 핵심원자재 회수를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해야 함
- 1항 및 2항에 언급된 국가 조치는 국제 및 연합 내 무역에 대한 장벽과 TFEU에 부합하는 연합 시장에서의 경제 왜곡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회원국은 재활용된 전기전자장비폐기물 관련 데이터를 위원회에 보고할 때, 시장에 출시된 핵심원자재의 입증된 추정치와 폐기물 장비에서 제거된 핵심원자재의 구성품 수량 및 회수된 핵심원자재량을 별도로 식별하여 보고해야 함
- 상기 5에서 언급 보고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전기전자장비폐기물로부터 핵심원자재를 수거하고 회수하기 위한 목표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침 2012/19/EU를 검토해야 함

7	- 회원국은 상기 1에 언급된 국가 프로그램의 채택과 상기 1~3에 따른 조치의 이행 및 효과뿐만 아니라 기준 충족에 대한 기여도 정보를 제공해야 함
8	 위원회는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까지 관련 핵심원자재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 구성 요소 및 폐기물 흐름의 목록을 명시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위임법률을 채택해야 함 위원회는 해당 목록을 작성할 때, 하기 가)~마)를 고려해야 함가) 제품, 구성 요소 및 폐기물 흐름에서 잠재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중요 원자재의 총량나) 제품, 구성 요소 및 폐기물 흐름이 유럽연합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범위다) 규제 격차라 기수가 및 폐기물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문제마)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존 수거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
9	- 위원회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한 후 리튬이온 배터리 및 중간 폐기물('Black Mass') 에 대한 전용 폐기물 코드를 개발해야 함

ㅇ (추출폐기물에서 핵심원자재 회수)

- 운영자는 폐기물 관리 계획 및 방법을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회원국은 폐기물 시설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1	- 지침 2006/21/EC 제5조에 따라 폐기물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운영자는 지침 2006/21/EC 제3조에 정의된 관할 기관에 하기 (가)~(다)에서 핵심원자재의 회수 가능성에 관한 예비 환경 및 경제성 평가 연구를 제공해야 함 (가) 시설에 보관된 추출폐기물 (나) 지침 2006/21/EC 발효 이후 운영자가 처리한 추출폐기물 (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폐기물이 되기 전 추출물
2	- 운영자는 추출폐기물에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한 핵심원자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관할 당국에 입증하는 경우, 상기 1에 따른 의무가 면제됨
3	 상기 1에 언급된 연구는 최소 추출폐기물 및 추출물에 포함된 핵심원자재의 양과 농도에 대한 추정 및 기술적·경제적 회수 가능성 평가 그리고 이를 회수할 경우의 환경적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운영자는 양과 농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함
4	- 기존 폐기물 시설 운영자는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후까지 상기 1에 언급된 연구를 지침 2006/21/EC의 제3조에 정의된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함 - 신규 폐기물 시설 운영자는 지침 2006/21/EC의 제5조에 따라 폐기물 관리 계획을 제출할 때 해당 연구 결과를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함

-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 위치한 방치된 폐기물 시설을 포함한 모든 폐쇄 폐기물 시설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에는 하기 (가)~(라)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 (가) 폐기물 시설의 위치, 면적 범위 및 폐기물 양 (나) 폐기물 시설의 운영자나 이전 운영자 및 (해당하는 경우) 법적 승계인 5 (다) 하기 7에 따라 추출폐기물에 포함된 모든 원자재의 대략적인 양과 농도 및 가능한 경우 원래 광물 매장지에 포함된 원자재의 대략적인 양과 농도 (라) 폐기물 시설에서의 핵심원자재 회수를 위해 회원국이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추가 정보 - 상기 5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는 본 규정 발효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구축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는 본 규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리되어야 함 6 - 데이터베이스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최소 2년마다 업데이트하여 추가로 이용 가능한 정보와 새로 폐쇄되거나 확인된 시설을 포함해야 함 - 상기 5의 (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은 하기 가)~다)를 수행해야 함 가) 폐쇄된 폐기물 시설에 대해 회원국은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한 허가 파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나)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잠재적·경제적으로 회수 가능한 양의 핵심원자재를 사전에 배제하지 않는 폐기물 시설의 경우, 회원국은 본 규정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대표적인 지구화학적 샘플링을 추가로 수행해야 함 7 다) 상기 가) 및 나)에 기술된 활동이 잠재적·경제적으로 회수 가능한 핵심원자재의 양을 표시한 폐기물 시설의 경우, 회원국은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까지 하기 내용을 수행해야 함 · 연합 차원의 관련 환경 요구사항 및 (해당되는 경우) 지침 2006/21/EC의 요구 사항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우 코어 검층 또는 동등한 기법을 포함하는 상세한 분석을 추가 수행해야 함 - 상기 7에 명시된 활동은 재산권, 토지 소유권, 광물자원 및 폐기물의 소유권과 기타 관련 조항과 국가 법률 제도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 이러한 요인이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회원국은 폐기물 시설 운영자 또는 소유자의 협조를 구해야 함 8 - 상기 7에 명시된 활동의 결과는 상기 5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 일부로써 접근 가능할 수 있어야 함 · 가능한 경우, 회원국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유엔 자원 기본 분류에 따른 폐쇄된 추출폐기물 시설의 분류를 포함해야 함

ㅇ (영구자석 재활용성)

- 핵심원자재를 포함한 제품을 출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하기 표와 같이 관련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위원회는 라벨링 형식을 정하는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함

-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후부터 하기 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제품에 A) 및 B)의 정보를 명시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은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지워지지 않아야 함 가) 자기공명영상장치, 풍력에너지 발전기, 산업용 로봇, 자동차, 경량운송수단, 냉각 발전기, 열펌프, 전기 모터(다른 제품에 포함된 경우 포함), 자동세탁기, 회전식 건조기,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또는 식기세척기 A) 이러한 제품에 하나 이상의 영구자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B) 제품에 하나 이상의 영구자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석이 하기 a)~d)의 1 유형 중 하나에 속하는지 여부 a) 네오디뮴-철-붕소 b) 사마륨-코발트 c) 알루미늄-니켈-코발트 d) 페라이트 - 상기 B)에 언급된 유형의 영구자석이 하나 이상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유형의 자석이 제품에 몇 개나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야 함 - 위원회는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기 1에 언급된 라벨링 형식을 정하는 2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함 - 본 규정 발효일의 3년 후부터 상기 1의 B)에 언급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제품 및 제품 내에 데이터 매체가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함 3 - 데이터 매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됨 - 상기 3에 언급된 데이터 매체는 하기 가)~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고유한 제품 식별자에 연결되어야 함 가) 자연인이나 법인의 이름,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우편 주소 및 사용 가능한 경우 연락 가능한 전자 통신 수단 나) 제품에 포함된 개별 영구자석의 무게. 위치 및 화학적 조성에 대한 정보와 자석 코팅, 접착제 및 사용된 첨가제 유무 및 유형에 대한 정보 다) 지침 2012/19/EU의 제15조의 (1)을 침해하지 않은 조건으로 영구자석에 대한 접근 및 제거에 필요한 일련의 모든 제거 단계, 도구 또는 기술을 비롯해 제품에 포함된 모든 영구자석에 대한 접근 및 제거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 제품에 내제된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에만 영구자석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상기 4의 나)에 언급된 정보는 이러한 전기 모터의 위치에 대한 정보로 대체할 수 있음 5 - 상기 4의 다)에 언급된 정보는 전기 모터의 접근 및 제거에 대한 정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기 모터의 접근 및 제거에 필요한 단계, 도구 또는 기술의 순서를 포함할 수 있음

6	- 다른 연합 법률에 따라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이하 에코디자인 규정)' 또는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에 정의된 제품 여권이 요구되는 상기 3에 언급된 제품은 상기 4의 정보를 제품 여권 또는 디지털 여권에 포함시켜야 함 - 상기 3에 언급된 정보는 최신 정보이어야 하며,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파산, 청산 또는 연합 내 활동 중단을 비롯하여 최소한 제품의 일반적인 수명에 10년을 더한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해야 함
7	 상기 4에 언급된 정보는 제품 모델 또는 동일 모델의 유닛별 정보가 상이한 경우특정 배치 또는 유닛을 지칭해야 함 상기 4에 언급된 정보는 리퍼비시업자, 수리업자, 재활용업자, 시장감시당국 및 세관당국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8	- 상기 3에 언급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자연인 또는 법인은 상기 4에 언급된 고유 제품 식별자가 '에코디자인 규정' 제12조(1)에 언급된 등록부에 업로드되도록 보장해야 함
9	- 영구자석의 재활용과 관련된 정보 요구사항이 '에코디자인 규정' 제4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 또는 상기 1에 열거된 제품에 대한 기타 연합 조화 법률에 규정된 경우, 해당 요구사항은 본 조항을 대신하여 적용됨
10	- 국방 또는 항공우주 응용 분야를 위해 설계된 제품은 본 조항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됨
11	- 자기공명영상장치, 자동차 및 범주 L*의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에 해당하는 경량운송수단은 본 조항의 요구사항은 본 규정 발효일의 5년 후부터 적용됨 * (EU) 제168/2013호의 범주 L
12	- 위원회는 세관당국의 업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에 해당하는 복합품목분류표* 코드 및 제품 설명 목록을 제공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해 부속서 6을 개정하는 위임법률을 채택할 권한이 있음 * 규정 (EEC) 2658/87 부속서1의 복합품목분류표

ㅇ (영구자석 재활용 함량)

- 자연인 및 법인은 영구자석 재활용 함량을 무료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는 최소 회수 비율에 대한 위임법률을 채택해야 함

1	-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후 또는 하기 2에 언급된 위임법률의 발효일로부터 2년
	후 중 더 늦은 날짜부터 가)를 출시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제품 내 포함된 영구자석에
	존재하는 폐기물로부터 회수한 하기 나)의 비율을 무료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함
	가) 상기 (영구자석 재활용성) 1의 B) 중 a)~c)에 언급된 하나 이상의 영구자석을 포함하고,
	모든 영구자석의 총 중량이 0.2kg을 초과하는 (영구자석 재활용성) 1에 언급된 제품
	나)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붕소, 사마륨, 니켈 및 코발트
	-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후까지 위원회는 상기 1에 언급된 제품에 포함된 영구자석의
2	제조 폐기물 또는 영구자석에 존재하는 사용 후 폐기물로부터 회수한 하기 가)의 비율
	계산 및 검증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위임법률을 채택해야 함
	가)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붕소, 사마륨, 니켈 및 코발트

- 위원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상기 1의 제품에 포함된 영구자석 내 존재하는 사용 후 폐기물로부터 회수한 하기 가)의 최소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는 위임법률을 채택해야 함 가)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붕소, 사마륨, 니켈 및 코발트 - 정당화된 사례의 경우, 다양한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최소 비율을 적용하거나 특정 제품을 이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최소 비율은 하기 a)~f)를 고려함 a) 사용 후 폐기물로부터 회수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붕소, 3 사마륨, 니켈 및 코발트의 기존 및 예측 가용성 b) 상기 1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시장에 출시된 상기 1에서 언급된 제품에 포함된 영구자석의 재활용 함량 비율의 상대 분포 c) 회수된 물질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영구자석 기술의 변화를 비롯한 기술적, 과학적 발전 d) 연합의 기후 및 환경 목표에 대한 최소 비율의 효과적이고 잠재적인 기여 e) 영구자석을 포함한 제품의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f) 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을 포함한 제품의 경제성에 미치는 불균형적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필요성 - 영구자석의 재활용 함량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에코디자인 규정' 제4조 또는 상기 1에 열거된 제품에 대한 기타 연합 조화 법률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4 경우, 해당 요구사항은 본 조항을 대신하여 적용됨 – 상기 1의 요구사항 적용일부터 원격 판매를 비롯하여 판매를 위해 1에 언급된 제품을 제공하거나 상업 활동 과정에서 전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및 5 법인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기 1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자기공명영상장치, 자동차 및 범주 L의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에 해당하는 경량운송수단의 경우, 단락 1 및 6에 규정된 요구사항은 단락 2에 언급된 위임법률 발효일의 5년 후부터 6 적용함

□ 인증 및 환경발자국

ㅇ (환경발자국 신고)

1

- 핵심원자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환경발자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핵심원자재의 환경발자국 계산 및 검증 규칙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채택해야 함

- 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핵심원자재의 환경발자국 계산 및 검증 규칙을 수립하고 타당한 평가 방법 및 관련 국제 표준을 고려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위임법률을 채택해야 함
 - 환경발자국 신고는 이러한 영향 범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해야 함

- 위원회는 환경발자국 신고 의무가 환경발자국이 더 낮은 핵심원자재 공급을 촉진하고 2 기후 및 환경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기후 및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데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핵심원자재에 대한 계산 및 검증 규칙을 채택해야 함 - 위원회는 상기 2에 규정된 의무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할 때. 하기 (a)~(d)를 고려해야 함 (a) 연합의 기후 및 환경 목표가 이미 해당 핵심원자재에 적용되는 기타 연합 법률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 및 방법 (b) 관련 국제 표준, 지침의 존재 및 채택 또는 이러한 표준에 대한 국제 수준의 합의 3 전망과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관행 (c) 연합의 기후 및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이 수행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적 프로젝트, 무역협정 및 기타 국제 문서 및 지원 활동의 효율성 (d) 경제운영자의 관련 경제적 비용 및 관리 부담 - 위원회는 상기 1에 따라 계산 및 검증 규칙을 채택한 핵심원자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환경발자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4 - 관련 요구사항은 시장에 출시된 개별 핵심원자재 유형에 적용되며, 핵심원자재가 제품의 전체 환경발자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환경발자국 신고에는 하기 (a)~(f)를 포함해야 함 (a)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등록 상호나 상표, 우편 주소나 연락 가능한 전자 통신 수단 (b) 신고서가 적용되는 핵심원자재 유형에 관한 정보 (c) 원자재 가공. 정제 및 재활용된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정보 (해당하는 경우) 5 (d) 상기 1에 따라 채택된 해당 검증 및 계산 규칙에 따라 계산된 핵심원자재 환경발자국 (e) 하기 6에 따라 채택된 해당 위임법률에 따라 제정된 핵심원자재 환경발자국 성능 등급 (f) 환경발자국 신고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웹 링크 - 위원회는 계산 및 검증 규칙이 채택된 핵심원자재에 대해 2년 내에 환경발자국 성능 6 등급을 설정하여 위임법률을 채택해야 함 - 핵심원자재를 포함하는 중간 또는 최종 제품이 다른 법률의 환경발자국 요구사항을 적용받는 경우, 가능한 각 핵심원자재의 환경발자국 및 탄소발자국을 전체 제품의 7 환경발자국 계산에 포함해야 함 8 - 환경발자국 신고는 무료 웹사이트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원격 판매를 비롯하여 판매를 위해 핵심원자재를 제공하거나 상업 활동 과정에서 전시하는 경우, 핵심원자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고객이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환경발자국 신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9 - 핵심원자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환경발자국 신고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오해를 야기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라벨, 마크, 기호 또는 문구를 제공해서는 안됨

□ 자유로운 이동, 적합성 및 시장 감시

ㅇ (자유로운 이동)

- 하기 1, 2의 경우, 회원국은 제품의 시판·사용 개시·전시를 금지할 수 없음

	- 회원국은 하기 (a)나 (b)의 이유로 본 규정을 준수하는 영구자석 또는 핵심원자재를
1	포함한 제품의 시판 또는 사용 개시를 금지,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음
	(a) 본 규정에서 다루는 영구자석의 재활용 또는 재활용 함량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이유
	(b) 핵심원자재의 환경발자국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이유
	- 회원국은 하기 (a)와 같은 경우, 해당 제품의 전시를 제한할 수 없음
2	(a) 무역박람회, 전시회 및 유사한 행사에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영구자석 또는
	핵심원자재를 포함한 제품 또는 재료가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규정을 준수하는
	적합성을 갖출 때까지 시판될 수 없음'을 명확히 명시한 표시가 있는 경우

ㅇ (적합성 및 시장 감시)

-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시장 감시는 아래와 같이 수행됨

	- 상기 (영구자석 재활용성) 및 (영구자석 재활용 함량)이 적용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1	전에 자연인 또는 법인은 적합성 평가 절차가 수행되고 요구된 기술문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해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EU 적합성 선언이 작성되고 CE 마크가 부착해야 함	
2	- 상기 (영구자석 재활용성)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 절차는 해당 제품이 (영구자석 재활용 함량)의 요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에코디자인 규정'의 부속서 IV에 규정된 절차로 하며, 적합성 평가 절차는 (영구자석 재활용성)의 2에 따라 진행함	
3	- 시장 감시와 관련하여 하기 (a)~(e)의 규칙이 적용됨 (a) '에코디자인 규정'의 제12장 및 제2조에 명시된 정의는 본 규정의 (영구자석 재활용성), (영구자석 재활용 함량), (환경발자국 신고)에 규정된 연합 시장에 출시한 제품에 적용되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적용됨 (b) 회원국은 '에코디자인 규정'에 명시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외에도 동 규정의 제59조의 1에 언급된 실행계획의 맥락에서 (영구자석 재활용성), (영구자석 재활용 함량), (환경발자국 신고)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함	

관련 법령 및 표준

□ 참조

3

- o (EU) No 168/2013 : 이륜차, 삼륜차 및 사륜차의 승인 및 시장 감시
- (EU) No 168/2013 : the approval and market surveillance of two- or three-wheel vehicles and quadricycles
- o EU :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요건(ESPR)
- EU: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ESPR)
- o (EEC) No 2658/87 : 관세, 통계 명명법 및 공동 관세에 관한 사항
- (EEC) No 2658/87: tariff and statistical nomenclature and on the Common Customs Tariff
- (EU) 2023/1542 :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지침 2008/98/EC과 규정(EU) 2019/1020 개정 및 지침 2006/66/EC 폐지
- (EU) 2023/1542 :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 o EU: 특정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지침 2011/92/EU
- EU: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Directive 2011/92/EU
- EU: 환경 책임 지침 2004/35/EC 개정 (추출폐기물 관련) 지침 2006/21/EC
- EU: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2004/35/EC Amendment (on extractive waste) Directive 2006/21/EC

붙임 규제원문

□ 규제원문 일부 번역

제5장

지속가능성

제1절

순화성

제25조

순환성에 대한 국가적 조치(National measures on circularity)

각 회원국은 [OP 삽입 요망: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휘까지 다음을 위해 고안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는 *유럽경제지역 내 국가간 조치 및 협력을 포함할 수 있는* 국가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 (-a) 제1(2)조 (db)에 명시된 벤치마크(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의 수요 증가를 완화한다.
- (a) 지침 2008/98/FC 제4조에 따라 재사용 및 수리 가능성뿐만 아니라 핵심 원자재 회수율이 높은 폐기물, 금속 스크랩 및 수명 종료 제품의 수집, 분류 및 처리를 증가시키고, 특히 환경 및 공중보건에 관한 연합 법률에 따라 제품 수명 및 핵심 원자재 재활용 시설에 대한 투입물로서 재활용 가능 재료의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재활용 시스템으로의 도입을 보장한다.
- (b) 핵심 원자재 회수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및 구성품의 *페기물 방지*, 재사용, *수리, 리퍼비시*(재정비 또는 재단장), 재제조 및 용도 변경을 증가시킨다.
- (c) 금속 스크랩 및 수명 종료 제품에서 유래한 재료를 비롯하여 1차 핵심 원자재 대신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2차 핵심 원자재의 사용을 늘리고, 적절한 경우 공공조달과 관련된 낙찰 기준에 재활용 함량을 고려하거나 *이러한 재료 사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등 제품* 리퍼비시를 촉진하다.
- (ca) 전체 가치사슬에서 핵심 원자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증가시킨다.
- (d) 핵심 원자재 재활용 기술의 기술적 성숙도를 높이고, 최소한 국가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따라 이러한 목적의 지원 조치를 포함시킴으로써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여 재료 효율성 및 응용 분야에서 핵심 원자재 대체를 촉진한다.
- (e) 기술 육성, 리스킬링(새로운 기술 습득), 업스킬링(숙련도 향상) 조치를 통해 인력이 핵심 원자재 가치사슬의 순환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 (ea) 최소한 국가 R&I(연구혁신) 프로그램에 따라 이러한 목적의 지원 조치를 포함시킴으로써 제품 설계 변경 또는 재활용성 증가를 통해 제품에서 핵심 원자재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 (eb) 생산국에서 핵심 광물의 책임 있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프로그램에 역량 강화 및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통합시키는 것을 촉진한다.

(ec) 최적의 재료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폐기물과 같은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는 폐기물 흐름의 재활용 과정에 대한 품질 표준 채택을 지원한다.

첫 번째 하위단락에 언급된 국가 프로그램은 특히 본 단락에 따라 취한 조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정보 및 모범 사례를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와 공유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경우, 다른 회원국과 협력하여 재활용 기술의 기술적 성숙도, 재료 효율성 및 핵심 원자재 대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 2. 단락 1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특히 연합 법률에 따라 수거, 처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제품 및 폐기물을 다루어야 한다. 기타 제품 및 폐기물의 경우, 기존 연합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단락 1의 (a) 및 (b)와 관련하여 동 단락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TREU의 제107조 및 제108조를 침해하지 않고 *정히 입증된 경우* 핵심 원자재 회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재사용 및 이러한 제품의 폐기물 회수를 장려하기 위해 할인, 금전적 보상 또는 보증금 반환 시스템과 같은 경제적 수단의 도입을 포함할 수 있다.
- 3. 각 회원국은 [OP 삽입 요망: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후]까지 추출폐기물, 특히 제26조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잠재적으로 경제적으로 회수 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된 폐쇄된 폐기물시설로부터 핵심 원자재 회수를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 4. 단락 1 및 2에 언급된 국가 조치는 TFEU에 따라 국제 및 연합내 무역 장벽과 연합 시장의 경쟁 왜곡을 방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5. 전기전자장비폐기물에 관한 지침 2012/19/EU의 제16(6)조에 따라 재활용된 전기전자장비폐기물량 관련 데이터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할 때, 회원국은 전기전자장비 시장에 출시된 핵심 원자재의 입증된 추정치, 이러한 폐기물 장비에서 제거된 핵심 원자재 상당량을 포함하는 구성품 수량 및 전기전자장비폐기물에서 회수된 핵심 원자재량을 별도로 식별하여 보고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보고의 형식 및 세부사항을 지정하는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법률은 제37(3)조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제1차 보고기간은 이러한 이행법률이 채택된 후 첫 번째 전체 역년을 포괄한다.
- 5.a 본 조항의 단락 5에 언급된 보고서에 근거하여 집행위원회는 전기전자장비폐기물에서 핵심 원자재를 수거하고 회수하기 위한 목표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침 2012/19/EU를 검토해야 한다.
- 6. 회원국은 제43조에 언급된 보고서의 일부로 단락 1에 언급된 국가 프로그램의 채택과 단락 1~3에 따라 취한 조치의 이행 및 효과(뿐만 아니라 제1조에 명시된 벤치마크 충족에 대한 기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7. 집행위원회는 ...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후]까지 단락 1 (a) 및 (b)의 의미에서 최소한 관련 핵심 원자재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제품, 구성품 및 폐기물 흐름 목록을 지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36조에 따른 위임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 이 목록을 작성할 때, 집행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a) 이러한 제품, 구성품 및 폐기물 흐름에서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한 핵심 원자재 총량

- (b) 이러한 제품, 구성품 및 폐기물 흐름에 연합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
- (c) 규제 격차
- (d) 수거 및 폐기물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과제
- (e) 이러한 제품, 구성품 및 폐기물 흐름에 적용되는 기존 수거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
- 7a. 집행위원회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한 후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중간 폐기물 흐름('블랙 매스')에 대한 전용 폐기물 코드를 개발해야 한다.

제26조

추출폐기물에서 핵심 원자재 회수

- 지침 2006/21/EC의 제5조에 따라 폐기물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운영자는 다음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원자재의 잠재적 회수에 관한 예비 환경 및 경제 평가연구를 지침 2006/21/EC의 제3조에 정의된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a) 시설에 저장된 추출폐기물
 - (aa) 지침 2006/21/EC가 발효된 이후 운영자가 처리한 추출폐기물
 - (b) 발생된 추출폐기물 또는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폐기물이 되기 전 추출물
- 1.a 운영자는 추출폐기물에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한 핵심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관할당국에 입증하는 경우 단락 1에 따른 의무에서 면제된다. (2)
- 2. 단락 1에 언급된 연구는 적어도 추출폐기물 및 추출물에 포함된 핵심 원자재의 양과 농도에 대한 추정 및 기술적, 경제적 회수 가능성뿐만 아니라 회수에 따른 환경적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운영자는 양 및 농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지정해야 한다. (3)
- 3. 기존 폐기물시설 운영자는 [OP 삽입 요망: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후]까지 단락 1에 언급된 연구를 지침 Directive 2006/21/EC의 제3조에 정의된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폐기물시설 운영자는 지침 2006/21/EC의 제5조에 따라 폐기물관리계획을 제출할 때 관할당국에 이 연구를 제출해야 한다. (4)
- 4.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 위치한 버려진 폐기물시설을 비롯하여 모든 폐쇄된 폐기물시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5)
 - (a) 폐기물시설의 위치, 면적 범위 및 폐기물량
 - (b) 폐기물시설 운영자 또는 이전 운영자 및 해당되는 경우 법적 승계인
 - (c) 본 조항의 단락 6에 따라 추출폐기물 및 가능한 경우 원래의 광상에 포함된 모든 원자재의 대략적인 양 및 농도
 - (d) 폐기물시설에서의 핵심 원자재 회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회원국이 관련이 있다고 간주한

추가 정보

- 5. 단락 4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는 [OP 삽입 요망: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9개월* 후]까지 구축해야 하며, 모든 관련 정보는 [OP 삽입 요망: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후]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추가 가용 정보 및 새로 폐쇄되거나 식별된 시설을 통합하기 위해 최소 2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6)
- 단락 4 (c)에 언급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은 최소한 다음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a) 폐쇄된 모든 폐기물시설의 경우, 회원국은 [OP 삽입 요망: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9개월 후]까지 사용 가능한 허가 파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b) 관련 가용 정보가 잠재적으로 경제적으로 회수 가능한 핵심 원자재의 존재를 사전에 배제하지 않은 폐기물시설의 경우, 회원국은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후]까지 대표적인 지구화학적 샘플링을 추가로 수행해야 한다.
 - (c) 본 단락의 (a) 및 (b)에 기술된 활동이 잠재적으로 경제적으로 회수 가능한 핵심 원자재량을 나타내는 폐기물 시설의 경우, 회원국은 [OP 삽입 요망: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후]까지 연합 수준의 관련 환경 요구사항 및 해당되는 경우 지침 2006/21/EC의 요구사항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우 코어 검층 또는 동등한 기법을 포함하는 보다 상세한 분석을 추가로 수행해야 한다.
- 7. 단락 6에 기술된 활동은 재산권, 토지 소유권, 광물자원 및 폐기물, 기타 관련 조항과 관련된 국내 법제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이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 회원국 관할당국은 폐기물시설 운영자 또는 소유자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단락 6에 기술된 활동의 결과는 *단락 4에* 연급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회원국은 UN 자원 기본 분류에 따른 폐쇄된 추출폐기물시설의 분류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

영구자석의 재활용성

- OP 삽입 요망: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후]부터 자기공명영상장치, 풍력에너지 발전기, 산업용로봇, 자동차, 경량운송수단, 냉각 발전기, 열펌프, 전기 모터(다른 제품에 통합된 경우 포함), 자동세탁기, 회전식 건조기,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또는 식기세척기를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이러한 제품에 다음을 명시한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지워지지 않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a) 이러한 제품에 하나 이상의 영구자석이 통합되어 있는지 여부
 - (b) 제품에 하나 이상의 영구자석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석이 다음 유형 중 하나에 속하는지 여부
 - (i) 네오디뮴-철-붕소
 - (ii) 사마륨-코발트

(iii) 알루미늄-니켈-코발트

(iv) 페라이트

(ba) (b)에 언급된 유형의 영구자석이 하나 이상 제품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 제품에 통합되어 있는 각 유형의 자석 수

- 2. 집행위원회는 [일자: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후]까지 단락 1에 언급된 라벨링의 형식을 정하는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이 이행법률은 제37(3)조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 3. [OP 삽입 요망: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후]부터 단락 1, (b)의 (i)~(iii)에 언급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제품 또는 제품 내에 데이터 매체가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데이터 매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단락 3에 언급된 데이터 매체는 다음에 대한 표적화된 접근을 제공하는 고유한 제품 식별자에 연결되어야 한다.
 - (a)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우편 주소 및 사용 가능한 경우 연락 가능한 전자 통신 수단
 - (b) 제품에 포함된 모든 개별 영구자석의 무게, 위치 및 화학적 조성에 대한 정보와 자석 코팅, 접착제 및 사용된 첨가제 유무 및 유형에 대한 정보
 - (c) 지침 2012/19/EU의 제15(1)조를 침해하지 않은 조건으로 최소한 영구자석에 대한 접근 및 제거에 필요한 일련의 모든 제거 단계, 도구 또는 기술을 비롯하여 제품에 통합된 모든 영구자석에 대한 접근 및 제거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 5. 통합된 영구자석이 제품에 통합된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에만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단락 4의 (b)에 언급된 정보는 이러한 전기 모터의 위치에 대한 정보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락 4의 (c)에 언급된 정보는 최소한 전기 모터에 대한 접근 및 제거에 필요한 일련의 모든 제거 단계, 도구 또는 기술을 비롯하여 전기 모터에 대한 접근 및 제거에 관한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 6. 다른 연합 법률에 따라 규정 XX/XXXX[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 또는 규정 XX/XXXX[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에 정의된 제품 여권이 요구되는 단락 3에 언급된 제품의 경우, 단락 4에 언급된 정보는 제품 또는 디지털 여권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락 3에 언급된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이어야 하며,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파산, 청산 또는 연합 내활동 중단 후를 비롯하여 최소한 제품의 일반적인 수명에 10년을 더한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해야한다.
- 7. 단락 4에 언급된 정보는 제품 모델 또는 동일한 모델의 유닛별 정보가 상이한 경우 특정 배치 또는 유닛을 지칭한다. 단락 4에 언급된 정보는 *리퍼비시업자, 수리업자*, 재활용업자, 시장감시당국 및 세관당국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규정 (EU) .../...[OJ: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에 대한 참조 삽입 요망]의 제9(1)조 (c)와 (d), 제10조 및 제13조뿐만 아니라 동 규정의 제2조에 명시된 해당 정의가 적용된다.
 - 단락 3에 언급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자연인 또는 법인은 단락 4에 언급된 고유 제품

식별자가 규정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의 [제12(1)조]에 언급된 등록부에 업로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하위단락의 목적상, 규정 (EU) 2023/xxx[OP: ESPR에 대한 참조 삽입 요망]의 제10조 (b)에 명시된 '제4조에 따라 채택된 관련 위임법률'과 제10조의 f 및 제13(2)조에 명시된 '제4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은 본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 읽어야 한다.

- 9. 영구자석 재활용과 관련된 정보 요구사항이 규정 XX/XXXX[OP 삽입 요망: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의 제4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 또는 단락 1에 열거된 제품에 대한 기타 연합조화 법률에 규정된 경우, 이러한 요구사항은 본 조항을 대신하여 적용한다.
- 10. 주로 국방 또는 항공우주 응용분야를 위해 설계된 제품은 본 조항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 단락 1,3 및 4에 언급된 특정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11. 자기공명영상장치, 자동차 및 범주 L의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에 해당하는 경량운송수단의 경우, 본 조항의 요구사항은 [OP 삽입 요망: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 후]부터 적용한다.
- 12. 집행위원회는 단락 1에 언급된 제품 및 본 조항과 제28조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세관당국의 업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제품에 해당하는 복합품목분류표¹ 코드 및 제품 설명 목록을 제공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해 제36조에 따라 부속서 6을 개정하는 위임법률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제28조

영구자석의 재활용 함량

- 1. [OP 삽입 요망: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후] 또는 단락 2에 언급된 위임법률의 발효일로부터 2년 후 중 더 늦은 날짜부터 제27(1)조 (b)의 (i)~(iii)에 언급된 하나 이상의 영구자석이 통합되어 있고 이러한 모든 영구자석의 총 중량이 0.2 kg을 초과하는 제27(1)조에 언급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제품에 통합된 영구자석에 존재하는 사용 후 폐기물에서 회수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붕소, 사마륨, 니켈 및 코발트의 비율을 무료 접속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OP 삽입 요망: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후]까지 집행위원회는 단락 1에 언급된 제품에 통합된 영구자석의 제조 폐기물 또는 이러한 영구자석에 존재하는 사용 후 폐기물에서 회수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붕소, 사마륨, 니켈 및 코발트의 비율의 계산 및 검증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36조에 따라 위임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계산 및 검증 규칙은 결정 768/2008/EC의 부속서 2에 명시된 모듈 중에서 적용 가능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관련 제품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정과 함께 지정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지정할 때, 집행위원회는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a) 해당 모듈이 제품 유형에 적합하고 추구하는 공익에 비례하는지 여부

¹ 규정 (EEC) 2658/87 부속서1의 복합품목분류표

- (b) 잠재적 제삼자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하고 독립적인 제삼자의 가용성
- (c) 제삼자의 개입이 필수적인 경우, 제조업체가 품질 보증 및 결정 768/2008/EC의 부속서 2에 명시된 제품 인증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
- 3. 늦어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집행위원회는 단락 1에 언급된 제품에 통합된 영구자석에 존재하는 사용 후 폐기물에서 회수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붕소, 사마륨, 니켈 및 코발트의 최소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는 위임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정히 정당화된 사례의 경우 다양한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최소 비율을 적용하거나 특정 제품을 이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첫 번째 하위단락에 언급된 위임법률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조치가 적용되는 제품의 채택 어려움에 맞춰 조정된 이행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첫 번째 하위단락에 언급된 최소 비율은 다음을 고려하여 사전 영향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

- (a) 사용 후 폐기물에서 회수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붕소, 사마륨, 니켈 및 코발트의 기존 및 예측 가용성
- (b) 단락 1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시장에 출시된 단락 1에 언급된 제품에 통합된 영구자석의 재활용 함량 비율의 상대 분포
- (c) 회수된 물질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영구자석 기술의 상당한 변화를 비롯한 기술적, 과학적 발전
- (d) 연합의 기후 및 환경 목표에 대한 최소 비율의 효과적이고 잠재적인 기여
- (e) 영구자석을 통합한 제품의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f) 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을 통합한 제품의 경제성에 미치는 불균형적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필요성
- 4. 영구자석의 재활용 함량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규정 XX/XXXX[OP 삽입 요망: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의 제4조 또는 단락 1에 열거된 제품에 대한 기타 연합 조화 법률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요구사항은 본 조항을 대신하여 적용한다.
- 5. 단락 1의 요구사항 적용일부터 원격 판매를 비롯하여 판매를 위해 단락 1에 언급된 제품을 제공하거나 상업 활동 과정에서 전시하는 경우 단락 1에 언급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고객이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단락 1에 언급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단락 1에 언급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단락 1에 언급된 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오해를 야기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라벨, 마크, 기호 또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주로 국방 또는 *항공*우주 응용분야를 위해 설계된 제품은 본 조항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

6. 자기공명영상장치, 자동차 및 범주 L의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에 해당하는 경량운송수단의 경우, 단락 1 및 6에 규정된 요구사항은 단락 2에 언급된 위임법률의 발효일로부터 5년 후부터 적용한다.

제2절

인증 및 화경발자국

제29조

인정된 스킴

1. 핵심 원자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인증 스킴을 개발하고 감독하는 정부, 산업협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스킴 소유자")는 집행위원회가 스킴을 인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스킴 인정 결정은 스킴 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늦어도 6개월 내에 공표해야 한다.

첫 번째 하위단락에 언급된 신청서는 부속서 4에 규정된 기준의 충족과 관련된 모든 관련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후]까지 신청서가 최소한 포함해야 할 정보를 규정한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법률은 제37(3)조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위임법률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단일 템플릿을 제공해야 한다. 단일 템플릿은 신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야 한다. 단일 템플릿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범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 단락 1에 따라 제공된 증거에 근거하여 인증 스킴이 부속서 4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스킴을 인정하는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법률은 제37(3)조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 집행위원회는 최소 2년마다 인정된 스킴이 부속서 4에 규정된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 4. 인정된 스킴의 소유자는 인정된 스킴에 적용된 모든 관련 변경 또는 업데이트를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변경 또는 업데이트가 인정 근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인정된 스킴을 시행하는 경제운영자가 해당 스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또는 중대한 사례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인정된 스킴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러한 사례가 인정 근거에 영향을 미치는 스킴의 결함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 집행위원회가 인정 근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된 스킴의 결함을 확인한 경우, 스킴 소유자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대 12개월 내의 적절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결함이 지속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더 이상 해당 스킴을 인정하지 않는다.
- 7. 스킴 소유자가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거부하고 집행위원회가 단락 6에 언급된 결함으로 인해 스킴이 부속서 4에 규정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스킴 인정을 철회하는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법률은 제37(3)조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8. 집행위원회는 인정된 스킴 등록부를 확립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 등록부는 무료 접속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웹사이트는 인정된 스킴 시행과 관련하여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의 피드백 수집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피드백은 고려를 위해 각 스킴 소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30조

환경발자국 신고

-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5에 따라 다양한 핵심 원자재의 환경발자국 계산 및 검증 규칙을 수립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평가 방법 및 관련 국제 표준을 고려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36조에 따라 위임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계산 및 검증 규칙은 가장 중요한 영향 범주 또는 정히 정당화된 경우 여러 영향 범주를 식별해야 한다. 환경발자국 신고는 이러한 영향 범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해야 한다.
- 2.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관련 환경 영향 범주 및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여 특정 핵심 원자재에 관련 환경발자국이 있고 이에 따라 시장에 출시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 범주(들)와 관련하여 해당 원자재의 환경발자국을 신고하는 의무가 환경발자국이 더 낮은 핵심 원자재 공급을 촉진하고 본 규정의 다른 조치로 인한 기후 및 환경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연합의 기후 및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데 필요하고 비례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경우 해당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계산 및 검증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 3. 단락 2에 규정된 의무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할 때 집행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a) 연합의 기후 및 환경 목표가 이미 해당 핵심 원자재에 적용되는 기타 연합 법률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 (b) 관련 국제 표준 및 지침의 존재 및 채택 또는 이러한 표준에 대한 국제 수준의 합의 전망과 제29조에 따라 인정된 자발적 스킴을 비롯한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관행
 - (c) 연합의 기후 및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이 수행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적 프로젝트, 무역협정 및 기타 국제 문서 및 지원 활동의 효율성
 - (ca) 경제운영자의 관련 경제적 비용 및 관리 부담
- 집행위원회는 단락 1에 따라 위임법률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 (a) 특히 다음 협의에 기초해야 한다.
 - (i) 전방 산업, SME 및 해당되는 경우 공예산업, 사회적 파트너, 무역업자, 소매업자, 수입업자, 인간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촉진하는 단체 ■ , 소비자 단체 및 학계를 비롯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
 - (ii) 이 의무로 인해 연합과의 거래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삼국
 - (iii) 이사회

(iiia) 유럽환경청,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과학자문위원회 및 유럽화학물질청

- (b) 총 무역 흐름 및 핵심 원자재 비용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삼국 공급업체가 환경발자국 신고를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가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연합의 기후 및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ba) 연합 법률에 따른 유사한 의무가 의도한 효과를 창출하고 연합의 환경 목표 달성에 유의미한 기여를 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 (c) 조치가 해당 핵심 원자재를 조달하는 연합 산업의 능력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연합의 기후 및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집행위원회가 단락 1에 따라 계산 및 검증 규칙을 채택한 핵심 원자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환경발자국 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하위단락에 명시된 요구사항은 시장에 출시된 각각의 개별 핵심 원자재 유형에 적용해야 하며, 핵심 원자재가 제품의 전체 환경발자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 또는 최종 제품에 포함되는 핵심 원자재에 적용해야 한다.

- 6. 단락 5에 언급된 환경발자국 신고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a)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우편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자 통신 수단
 - (b) 신고서가 적용되는 핵심 원자재 유형에 관한 정보
 - (c) 해당되는 경우 핵심 원자재가 추울, 가공, 정제 및 재활용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정보
 - (d) 단락 1에 따라 채택된 해당 검증 및 계산 규칙에 따라 계산된 핵심 원자재의 환경발자국
 - (e) 단락 7에 따라 채택된 해당 위임법률에 따라 제정된, 핵심 원자재에 해당하는 환경발자국 성능 등급
 - (f) 환경발자국 신고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의 공개 버전에 접근할 수 있는 웹 링크
- 7.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5에 따라 단락 1에 의거하여 계산 및 검증 규칙이 채택된 핵심 원자재에 대해 2년 내에 환경발자국 성능 등급을 설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36조에 따라 위임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 7a.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는 중간 또는 최종 제품이 다른 법률에서 연합 환경발자국 요구사항을 적용 받는 경우, 가능한 한 각 핵심 원자재의 환경발자국 및 탄소발자국을 전체 제품의 환경발자국 계산에 통합해야 한다.
- 7b. 2030년 12월 31일까지 집행위원회는 연합 시장에 배치된 모든 제품 또는 특정 제품에 대해 단락 7에 언급된 최고 환경발자국 성능 등급에 속하는 원자재로만 연합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옵션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입법 제안을 첨부해야 한다.
- 8. 환경발자국 신고는 무료 접속 웹사이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단락 5에 연급된 환경발자국 신고의 형식을 정하는 이행법률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이행법률은 제37(3)조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9. 원격 판매를 비롯하여 판매를 위해 핵심 원자재를 제공하거나 상업 활동 과정에서 전시하는 경우 핵심 원자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고객이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환경발자국 신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핵심 원자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환경발자국 신고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오해를 야기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라벨, 마크, 기호 또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제3절

자유로운 이동, 적합성 및 시장 감시

제31조

자유로운 이동

- 회원국은 본 규정에서 다루는 영구자석의 재활용 또는 재활용 함량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이유 또는 핵심 원자재의 환경발자국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이유로 본 규정을 준수하는 영구자석 또는 핵심 원자재를 통합한 제품의 시판 또는 사용 개시를 금지, 제한하거나 막을 수 없다.
- 2. 무역박람회, 전시회, 시연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 회원국은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영구자석 또는 핵심 원자재를 통합한 제품 또는 재료가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규정을 준수하는 적합성을 갖출 때까지 시판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제품의 전시를 막을 수 없다.

제32조

적합성 및 시장 감시

- 1. 제27조 또는 제28조가 적용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가 수행되고 요구된 기술문서가 작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해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EU 적합성 선언이 작성되고 CE 마크가 부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2. 제27조에 규정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28조에 규정된 요구사항도 적용되어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제28(2)조에 따라 채택된 계산 및 검증 규칙에 명시된 절차이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 (EU) 2023/xxx[OP: ESPR에 대한 참조 삽입 요망]의 부속서 4에 명시된 절차이어야 한다.
- 규정 (EU) 2023/xxx[OP: ESPR에 대한 참조 삽입 요망]의 제9장과 제37조, 제38조, 제39조뿐만 아니라 동 규정의 제2조에 명시된 해당 정의가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된 연합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적용되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 4. 시장 감시와 관련하여 다음 규칙을 적용한다.

- (a) 규정 (EU) 2023/xxx[OP: ESPR에 대한 참조 삽입 요망]의 제12장 및 동 규정의 제2조에 명시된 해당 정의가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0조에 규정된 연합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적용되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 (b) 회원국은 규정 (EU) 2023/xxx[OP: ESPR에 대한 참조 요망]에 규정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외에도 동 규정의 제59(1)조에 언급된 실행계획의 맥락에서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c) 규정 (EU) 2023/xxx[OP: ESPR에 대한 참조 삽입]의 제60조 및 제61(1)조는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규정된 요구사항에도 적용된다.
- (d) 집행위원회는 규정 (EU) 2023/xxx[OP: ESPR에 대한 참조 삽입]에 따라 규정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외에도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규정된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동 규정의 제61(2)조 및 제61(3)조에 언급된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e) 규정 (EU) 2023/xxx[OP: ESPR에 대한 참조 삽입 요망]의 제62조를 시행할 때 동 조항에 언급된 행정협력단('ADCO') 및 집행위원회는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규정된 요구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 5. 단락 3 및 4의 목적상 규정 (EU) 2023/xxx[OP: ESPR에 대한 참조 삽입 요망]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
 - (a) 제37(1)조에 명시된 '제4조에 따라 채택된 관련 위임법률의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제63(1)조에 명시된 '제4조에 따라 채택된 관련 위임법률에 규정된 요구사항' 및 규정 (EU) 2023/xxx[OP: ESPR에 대한 참조 삽입]의 제63(5)조에 명시된 '제4조에 따라 채택된 관련 위임법률의 요구사항'은 '본 규정의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언급으로 읽어야 한다.
 - (b) 규정 (EU) 2023/xxx[OP: ESPR에 대한 참조 삽입 요망]의 제37(3)조 및 제63(1)조에 명시된 '제4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은 '본 규정의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품 또는 재료'에 대한 언급으로 읽어야 한다.
 - (c) 제41조에 명시된 '제4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에 따른 적합성 평가 업무' 및 규정 (EU) 2023/xxx[OP: ESPR에 대한 참조 삽입 요망]의 제45(10)조에 명시된 '제4조에 따라 채택된 관련 위임법률에 따른 적합성 평가 업무'는 '본 규정의 제28(2)조에 따라 채택된 계산 및 검증 규칙에 따라 규정된 적합성 평가 업무'에 대한 언급으로 읽어야 한다.
 - (d) 규정 (EU) 2023/xxx[OP: ESPR에 대한 참조 삽입 요망]의 제53(1)조에 명시된 '제4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는 '본 규정의 제28(2)조에 따라 채택된 계산 및 검증 규칙에 규정된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언급으로 읽어야 한다.
- 이 조항은 규정 2018/858 및 규정 168/2013에 따른 형식 승인이 적용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